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6. . (제 회)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재외동포청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24. ~ 6.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등에 관련된 사항
15.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17.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54”를 “190”로 하고, 일반직 계 “105”를 “14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2”를 “3”으로 하고, 4급 또는 8등급 이하 “102”를 “137”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0조(교류협력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신설>	11. 재외동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12. 재외동포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3. 재외동포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14.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등에 관련된 사항
<신설>	15.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6. 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17.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

	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 8명-----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재외동포청 직제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4</u>	· <u>190</u>	+36
·	·	·	
·	·	·	
일반직 계	<u>105</u>	<u>141</u>	+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u>2</u>	<u>3</u>	+1
4급 또는 8등급 이하	<u>102</u>	<u>137</u>	+35

■ 재외동포청 직제 [별표 2]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3명
2.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13명
3. 교류협력국	1명
4. 교류협력국 1개 정책관 등	1명
4. 교류협력국 7개 과	66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